

8. 共同住宅團地內 商街의 土地區劃措置

資料提供：建設部 住宅開發課

- 건설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상가부지를 공동주택부분과 완전히 구획하도록 '94.4.9 각시·도에 지시하였다.
- 그동안, 공동주택 건설시 상가를 주민편익시설로써 단지의 일부로 보아 공동주택 부지와 별도로 구획하지 않고,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가면적 비율로 상가부지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부지와 공유지분이 되어 상가부지 위치가 불분명하고, 부지면적도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일부 있었음.
- 따라서, 상가 주차장의 위치도 불분명하고, 상가물품을 외부에 적치하는 등으로 주택의 입주민과 상가입점자 사이에 마찰도 빚어온 실정이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승인시 단지내 상가는 별도로 대지를 분할하여 도로변에 면하도록 하거나, 상가부지를 경계석등으로 완전히 구획하여 동 구획된 대지내에 상가건물과 주차장을 배치하도록 조치 하였다.

몰래버린 쓰레기가 공해되어 내게온다